

광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54307(본소), 2016나52025(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수리비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54307(본소), 2016나52025(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20346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6. 6. 17.

판결 선고 2016. 7. 15.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20346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6,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6. 피고로부터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350UCA, 이하 '이 사건 선외기'라 한다)를 9,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당초 사용하던 중고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225AETU)를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2011. 3. 17. 나머지 3,4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를 해승호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선외기에 관하여 2011. 10. 13. 하부 기어수리를, 2012. 7. 27. 하부수리를, 2012. 8. 6. 및 2012. 12. 7. 엔진블록의 교체를, 2013. 4. 17. 하부 수리를 각 진행하였다. 피고는

2013. 4. 15. 원고로부터 수리비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도로 수리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선외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면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절하다가 2013. 1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외기를 인도받아 같은 달 12. 주식회사 와이케이엠에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 이외에 피고로부터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150BETX, 이하 '이 사건 150 선외기'라 한다)를 구매한 바 있는데, 이 사건 150 선외기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5,69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와이케이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매매대금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위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선외기에 고장이 발생하여 수차례 수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선외기에는 당초 하자가 존재하였고, 이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만큼 중대한 하자이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은 3년 또는 최소한 2년인데, 그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로 인하여 5회의 수리를 받았으나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외기를 반환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선외기를 회수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동안 발생한 수리비 및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선외기에 발생한 고장은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관리상의 소홀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하자를 안 날인 2013. 11. 10.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원고의 해제 주장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은 3년이 아닌 1년이며,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매매대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소

1) 피고 이 사건 선외기 수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선외기는 피고가 수거하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수리비 및 미지급된 매매잔대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정산합의가 파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6,278,000원(= 이 사건 선외기 수리비 6,585,000원 + 미지급된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매매대금 400만 원 + 이 사건 150 선외기 수리비 5,69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가)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수리비는 이 사건 선외기에 당초 존재하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일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미지급된 이 사건 선외기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거나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일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이 사건 150 선외기 수리비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에 제3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만일 원고에게 위 수리비 및 매매잔금 반환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바 없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0. 합의를 통해 상호간에 정산을 모두 마쳤음에도 원고가 본소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정산은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정산 시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수리비, 매매잔금 등을 반소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선외기의 수거 당시인 2013. 11. 10. 어떠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된다.

4.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와 피고의 2013. 11. 10.자 합의의 내용

1) 이 사건 선외기를 매수한 이후 약 2년 동안 수차례 이 사건 선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를 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외기의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D은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피고는 고장원인에 대하여 크랭크 축을 잡아주는 링이 제작이 잘못되어 돌아가다가 빠져서 크랭크 축이 밑으로 내려와 돌면서 엔진을 쳐서 엔진블럭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초 이 사건 선외기에 하자가 존재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원고와 피고가 2013. 11. 10.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0. 원고는 그동안 발생한 수리비 및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선외기를 매수하여 장착하되,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선외기와 관련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선외기를 회수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동안 발생한 수리비 및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2013. 11. 10.자 합의'라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에 당초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외기를 수차례 수리한 사실과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는 하자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선외기를 수차례 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장의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용과정에서 외부적인 충돌에 의하여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이 사건 선외기에 당초 존재하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피고가 이 사건 선외기 고장의 원인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F은 단지 원고의 일을 도와주는 인부로 선외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② 이처럼 이 사건 선외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선외기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거나 확인을 받은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동의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를 2년 6개월 정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누리고, 매매대금도 다시 반환을 받게 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선외기의 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외에도 당초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선외기 수거 당시 중고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피고가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③ 제1심 증인 E, D은 이 사건 선외기의 수거 이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E은 상당한 기간 사용한 후 이를 수거하는 것은 보통 인수하는 경우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선외기의 하자는 발생시기나 발생이유가 다양하여 한 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선외기 이외에 이 사건 150 선외기에 대하여도 수리를 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선외기에 대한 수리비가 약 650만 원, 이 사건 150 선외기에 대한 수리비가 약 560만 원으로 총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위 수리비를 원고에게 청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수리비를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객들을 많이 소개해 주어 도의적으로 선외기를 무상으로 수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2013. 11. 10.자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2013. 11. 10.자 합의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는 원고가 위 합의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이 사건 선외기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2013. 11. 10.자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발생한 수리비 및 이 사건 선외기의 매매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 청구 관련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이처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의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등에 관한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달리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적용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혜영

판사김용균

판사정은영